

이사회 규정

2022. 02. 21.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체정 2010. 04. 23
개정 2010. 05. 14
개정 2014. 03. 21
개정 2017. 03. 24
개정 2017. 05. 12
개정 2018. 03. 27
개정 2019. 08. 09
개정 2021. 08. 10
개정 2022. 0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및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4 조의 2(이사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 (2)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의장)

- (1)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중에 의장을 정한다.
- (2) 대표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종류)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마다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개최 장소를 서울 내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다.
-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권자)

-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각 이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의안 및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그 7 일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의 소집절차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생략될 수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 (1)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부의 및 보고사항)

-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의결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승인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공동대표의 결정
 -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7) 신주의 발행
 - (8) 사채의 모집
 - (9) 준비금의 자본전입
 - (10)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
- (2) 사업 계획
- (3)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
-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5)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제 11 조(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 또는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ESG 경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간사)

-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2)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사 정보에 대한 이사의 권리

제 17 조(재무제표 등의 보고)

대표이사는 각 이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적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이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각 월말로부터 10 일 이내에(그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월별 경영·영업실적 보고서 및 경영 회계 자료
- (2) 분기 또는 반기일로부터 45 일 이내에(그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미필 재무제표
- (3) 회계연도말로부터 4 개월 이내에(그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연간 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 (4) 기타 이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 18 조(증권 발행 신고)

대표이사는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감독관이나 증권거래소에 증권신고서, 예비사업설명서, 최종사업설명서, 상장신청서 또는 기타 문서들을 제출한 경우 그 제출 사실을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고 이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즉시 요청한 이사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 19 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 및 조사권)

- (1)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주간 임원회의 및 다른 내부적인 임원회의에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다.
- (2) 각 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회사에 합리적인 사전 통보를 한 후,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장부, 기록, 사업운영 및 재정 관련 정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가 감독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각 이사들이 자회사에 대하여도 방문하여 자회사의 장부, 기록, 사업운영 및 재정 관련 정보를 열람, 복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독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사외이사 지원)

- (1)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 (2)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선물, 교통비/출장비, 수당/사례비 등을 제공하며,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대표이사 위임사항

제정 2010. 04. 23

개정 2021. 08. 10

이사회 규정 제 11 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함. 이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아래 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를 명시적으로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해설될 수 없음.

1. 건별 자본금 50% 미만의 차입 또는 보증 (일련의 관련 거래의 경우, 합산 금액 기준)
2. 수출입 관련 무역 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3.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4. 자본금 10% 미만의 출자, 투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일련의 관련 거래의 경우, 합산 금액 기준)
5.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의 매입 및 매각 (일련의 관련 거래의 경우, 합산 금액 기준)
6.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 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일련의 관련 거래의 경우, 합산 금액 기준)
7. 거래금액이 자본금 10% 미만으로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일련의 관련 거래의 경우, 합산 금액 기준)
8. 기존 보증 및 차입의 기간 연장 (일련 관련 거래의 경우, 합산 금액 기준)
9.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으로 유보되지 않은 사항에 한한다)

주식회사 현대퓨처넷